



보도시점 2026. 9. 13.(일) 11:00
2026. 9. 14.(월) 조간 배포 2026. 9. 11.(금) 16:00

놓치면 후회할 소중한 기회, 자진 신고기간 부담없이 동물등록하세요!

-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9.1~10.31) 및 집중 단속기간(11.1~11.30) 운영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외장형은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는 물론,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위성승 (044-201-2623)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자진신고 5.1.~6.30.
집중단속 7.1.~7.31.

2차

자진신고 9.1.~10.31.
집중단속 11.1.~11.30.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①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② 유기동물 발생 감소
- ③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 ① 동물병원 방문
- ② 내장칩 시술(주사)
- ③ 등록 완료

안전합니다



외장형 방식

- ① 사·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② 외장형 장치 구입
- ③ 등록 완료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②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③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④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30일 이내
 - ⑤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⑥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⑦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② 사·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③ 정부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신고만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정부 관련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